공 고 문

영동군 공고 제 2023-1178호
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·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·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9. 25.

영 동 군 수

- 1.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
 - □ 제목 :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 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
 - ㅇ 목적 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
 - ㅇ 지역 : 전국
 - ㅇ 대상 : 시설출입차량*의 소유자 및 운전자
 - * 시설출입차량: 가축운반, 알운반, 동물의약품운반, 사료운반, 가축분뇨운반, 왕겨·쌀겨·톱밥·깔짚 운반, 퇴비운반, 난좌운반, 가금부산물운반, 가축사체운반, 진료·예방접종, 기계수리, 가금 출하·상 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, 가축사육시설 운영·관리차량, 시료채취·방역차량
 - 기간 : 2023. 10. 1. ~ 2024. 2. 29.
 - * 다만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(검출)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, 고병원성 AI 확진(야생조류 발생 포함) 시 즉시 시행(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)
 - 내용: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*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시설**을 방문하기 전,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
 - * 가금농장: 축산법에 따른 허가·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(종계·종오리), 부화업
 - ** 축산관계시설: 가금류 관련 도축장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사료제조업, 부화장, 비료제조업, 가축분뇨처리업

-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,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 히 소독하여야 하며,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·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
-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(울타리 안)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
 - * (예시)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 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
- (예외기준)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·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,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(다만,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)

2~8.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

□ 제목 :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

ㅇ 목적 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

ㅇ 지역: 전국

- 대상: 가금농장의 소유자(관리자)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. 축산 관련 종사자*
 - * 백신접종팀, 상하차반, 가축진료인력, 컨설팅·인공수정인력, 동물약품업체 관계자, 계열화사업자 소속 직원,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
- ㅇ 기간 : 2023. 10. 1. ~ 2024. 2. 29.
 - * 다만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(검출)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, 고병원성 AI 확진(야생조류 발생 포함) 시 즉시 시행(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)
- 내용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

구분	적용대상	주요 명령 내용
2	가금농장 (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)	○ 가금농장의 울타리(담장)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-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, 동물의약품운반, 난좌운반, 가축사체운반, 진료·예방접종, 기계수리,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, 가축사육시설 운영·관리차량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(담장)

구분	적용대상	주요 명령 내용			
		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-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 운송, 사료운송, 분뇨·퇴비운송, 깔짚차량을 의미하며,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의 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*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,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·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실시 -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,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,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·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*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,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-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·종계·종오리·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,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·장비·차량(지게차 포함)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*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·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,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-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, 우편전용차량,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,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, 소방차량,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			
3	산란계 밀집사육단지 (소재지: 세종시 부강면, 포천시 자일리, 천안시 풍세면, 김제시 용지면, 나주시 공산면, 영주시 장수면, 영주시 안정면, 철곡군 지천면, 봉화군 봉화읍, 양산시 상북면)	○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-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 하여야 함 *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(소독필증 발급)하고,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- 다만, 시·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 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* 시·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** 다만,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 관할 시·군에서 단지 내 농가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농가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, 농식			

구분	적용대상	주요 명령 내용			
		품부 및 시·도와의 협의를 통해 밀집단지 내부에 진입 가능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(지정된 환적장소를 검역본부에 통보) -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·단지의 기자재·장비·차량 (지게차 포함) 등은 농장·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 하여야 함			
4	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(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)	○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-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후 반출(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)하여야 함 - 다만,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(페사체포함)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*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,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아니한다. *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			
5	가금농장 (사육시설 50m² 초과 농장) 및 분뇨처리시설	○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·도 간 이동금지 -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·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,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·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, 출발지 관할 지자체(시·도 가축방역기관)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-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, 「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」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」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* 시·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(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)은 시·도 내 이동으로 인정 **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·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			
6	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 (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)	○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- 지대(포대)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*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, 작업 전·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·소독 실시 - 다만,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·차단되어 사람과 도구			

구분	적용대상	주요 명령 내용
		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, 농장 출입구 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
7	가금농장 (사육시설 50m² 초과 농장)	 ○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-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 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·군·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,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(유선·문자·팩스 등) -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, 팀원·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·신발 소독을 실시(1회용 덧신 가능)하고 장비·도구·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-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 (관리자)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○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- (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) 가축질병 검사·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, - (컨설팅·인공수정 인력,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,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)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,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-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·군·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·신발 소독 실시(1회용 덧신 가능),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(관리자)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·군·구에 당일 제출
8	가금농장 (사육시설 50m² 초과 농장)	○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-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*은 1개 농장 (A)에서 사용하는 파레트·합판·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*이 소유한 다른 농장(A 이외)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*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

9.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

- □ 제목 :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
 - ㅇ 목적 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
 - ㅇ 지역: 전국
 - 다상: 가금농장의 소유자(관리자) 및 종사자, 가축거래상인, 전통시장 가금 파매소의 종사자
 - 기간: 2023. 10. 1. ~ 2024. 2. 29.
 - * 다만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(검출)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, 고병원성 AI 확진(야생조류 발생 포함) 시 즉시 시행(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)
 - 내용: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·중추(70일
 령 미만), 오리,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함
 - *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, 3·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
 -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, 각 지자체(시군구)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, 판매 전·후 마다 해당 시설·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(검사증명서)를 휴대*하여야 함
 - *「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」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 서 휴대 의무

- ※ 근거 법령: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제19조제1항
 - ※ 위반 시 벌칙: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※ 문의처 : 영동군 과수축산과 가축방역팀 ☎043-740-3443

격리・억류・이동제한・소독・교통차단・출입통제 명령서

제 2023-8호						
가금농장의 소유자(관리자)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, 축산 관련 종사자						
전국						
4	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* 다만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(검출)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					
	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					
	구분	연번	주요 내용	명령대상		
		1	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	축산차량 및 종사자		
		2	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	축산차량		
		3	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* 외 진입금지 * 진입가능 : 가축, 사료, 분뇨, 깔짚, 방역 * 불가 : 알, 난좌, 동물약품, 상하차반, 택배 등	축산차량		
		4	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	알운반차량		
	 해정	5	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*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,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	산란계, 메추리 농장		
	명령	6	시·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	분뇨차량		
	(10건)	7	종계·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*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 과 구확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	사료차량		
		8	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, 외부 축 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*사전 신고, 방역수칙 준수, 서약서 제출 준수	축산차량 및 종사자		
		가금 등 장 축산 관련 전국 2023년 * 다만, 가금 등 장 명령	가금농장의 소유 축산 관련 종사자 전국 2023년 10월 1일 * 다만, 고병원성 가금농장 내 고병 구분 연변 1 2 3 4 행정 6 (10건) 7	가금농장의 소유자(관리자)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연축산 관련 종사자 전국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* 다만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(검출)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7분 연변 주요 내용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* 외 진입금지 3 * 진입가능 : 가축, 사료, 분뇨, 깔짚, 방역 * 불가 : 일, 난좌, 동물약품, 상하차반, 택배 등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*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8 시·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가금농장에 백신접종림 및 상하차반, 외부 축		

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

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·중추,

산란성계,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

및 기자재* 공용 사용 금지

* 파레트, 합판, 왕겨살포기

가금농장

전통시장

판매소,

거래상인

법적근거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제19조제1항

10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를 명합니다.

2023년 9월 25일

영 동 군 수

유의사항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른 격리・억류・이동제한・소독・교통차단・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